

학교법인 예운학원

2021학년도 4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9명	2명
재적임원	9명	2명
참석임원	6명	0명

1. 일 시 : 2021년 08월 27일 15:30(회의소집 통보일 : 2021년 08월 17일)

2. 장 소 :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회의실(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60. 4층)

3. 임원 출석현황

- 이사 (6 인) : 지홍원, 윤진영, 김재현, 이경재, 김주현, 이재웅
- 감사 (0 인) :

○ 불참임원

- 이사 (3 인) : 김학만, 김영철, 손재근
- 감사 (2 인) : 윤관, 이언

○ 참석직원 : 예운학원 법인사무국 김재현 과장

4. 안 건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회의내용

15:30분에 법인과장이 이사회의 안건에 관련하여 회의자료의 내용을 이사님들에게 보고한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금일의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성립됨을 선언합니다.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윤진영	이사	윤진영
-----	----	-----	----	-----	----	-----

의장(지홍원 이사장) : 이번 안건은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과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7조의3에 의거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운학원의 윤관 감사님이 2021년 12월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며, 윤관 감사님은 개방감사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감사 추천을 하여야 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준비된 회의자료를 검토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윤진영) :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과 예운학원 정관에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제정으로 학교 법인의 이사 선임 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위원 2인을 추천해야함에 따라 김주현 이사와 이경재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으면 합니다.

이사(이재웅) :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대학 운영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추신 김주현 이사와 이경재 이사를 추천하자는 안에 찬성합니다.

이사(윤지현) : 찬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사(이경재) : 윤지현 이사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주현 이사와 이경재 이사를 추천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살펴서 의견을 기다린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	이사	기수현	이사	윤진영	이사	이경재
-----	----	-----	----	-----	----	-----

참석한 이사 전원이 거수로서 찬성을 표시하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참석한 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주현 이사와 이경재 이사를 추천하는 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이사회 폐회를 선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사전원 : 예

6. 간서명자 선출

대표 간서명자로 3인은 이경재이사, 김주현이사, 윤진영이사를 대표 간서명자로 선임하자는 이재웅이사의 동의와 윤지현이사의 재청으로 간서명자로 선정하다.

7. 폐회선언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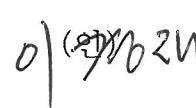
2021년 08월 27일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지홍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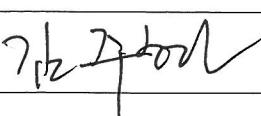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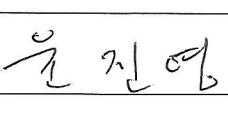
이사 윤진영 

이사 윤지현 

이사 이경재 

이사 김주현 

이사 이재웅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01	7/16 2021
-----	----	---	----	--	----	----	-----------

학교법인 예운학원

2021학년도 4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9명	2명
재적임원	9명	2명
참석임원	6명	0명

1. 일 시 : 2021년 08월 27일 15:50(회의소집 통보일 : 2021년 08월 17일)

2. 장 소 :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회의실(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60. 4층)

3. 임원 출석현황

- 이사 (6 인) : 지홍원, 윤진영, 손재근, 이경재, 김주현, 이재웅
- 감사 (0 인) :

○ 불참임원

- 이사 (3 인) : 김학만, 김영철, 손재근
- 감사 (2 인) : 윤관, 이언

○ 참석직원 : 예운학원 법인사무국 김재현 과장

4. 안 건

- 정관변경 안

5. 회의내용

15:50분에 법인과장이 금일 이사회의 안건에 관련하여 회의자료의 내용을 이사님들에 게 보고한다.

의장(지홍원 이사장) : 금일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성립됨을 선언합니다.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간서명	이사	기숙사	이사	윤진영	이사	이경재
-----	----	-----	----	-----	----	-----

의장(지홍원이사장) : 이번 안건은 사립학교법 제45조 및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100조(정관변경)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회의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이재웅) : 회의자료를 살펴보니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3 개정에 의거하여 “제20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를 “제20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후 2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로 “제68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를 “제68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사(이경재) :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및 제68조 (징계위원회의 구성)①의 개정에 관한 원안에 찬성합니다.

이사(김주현) : 이경재이사의 찬성에 동의합니다.

이사(윤진영) : 김주현이사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및 제68조 (징계위원회의 구성)①의 개정에 관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반대하시고자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살펴서 의견을 기다린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윤진영	이사	이경재
-----	----	-----	----	-----	----	-----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거수로서 찬성을 표시한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예, 저를 포함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학교법인 예운학원 제20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및 제68조 (징계위원회의 구성)①의 개정에 관한 원안에 관하여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해도 괜찮겠습니까?

6. 간서명자 선출

대표 간서명자로 3인은 이경재이사, 김주현이사, 윤진영이사를 대표 간서명자로 선임하자는 이재웅이사의 동의와 윤지현이사의 재청으로 간서명자로 선정하다.

7. 폐회선언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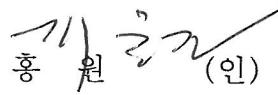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후 <u>10일 이내</u> 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u>3월간</u>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후 <u>2일 이내</u> 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u>1년간</u> 공개하여야 한다.
제68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u>5인 내지 9인</u>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68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u>5인</u>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021년 08월 27일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윤진영	이사	이재웅
-----	----	-----	----	-----	----	-----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지 흥원 

(인)

이사 윤진영 

이사 윤지현 

이사 이경재 

이사 김주현 

+

이사 이재웅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윤진영	이사	이경재
-----	----	-----	----	-----	----	-----